

중국산 양벧 생과실 위험관리방안

□ 위험관리방안 요구 대상 병해충

- 검역병해충(금지해충 포함) 22종(병 6, 해충 16종)중 16종(병4, 해충12)
 - *Blumeriella jaapii*, *Clasterosporium carpophilum*(진균류)
 - *Cherry leaf roll virus*, *Plum pox virus*(바이러스류)
 - *Anarsia lineatella*, *Grapholita funebrana*, *Grapholita prunivorana*(나방류)
 - *Bactrocera dorsalis*(과실파리류; 굴과실파리)
 - *Eurytoma samsonovi*(씨살이좀벌류)
 - *Hoplocampa* 속 2종(잎벌류)
 - *Rhynchites* 속 5종(거위벌레류)

□ 위험 관리 방안 개요

- 중국 산둥성에서만 생산된 양벧 생과실에 한해서만 수입허용
- 중국 질검총국(AQSIQ)에 대한국 수출 지정 포장 및 선과시설로 등록된 지정포장 및 선과시설에서 생산된 것에 한해서만 수입허용
- 중국측의 과실파리 예찰 시스템 및 긴급조치 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무발생 지역(4~9월)으로 증명된 지역의 대한국 수출 지정 포장에서 생산된 것에 한해서만 수입허용
- 대한국 수출 지정 포장에 대하여 나방류 3종 및 바이러스 2종에 대해서는 중국측의 종합적 과원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AQSIQ의 감시 감독하에 과수원별로 지정된 식물보호자가 정기적인 예찰(4-8월, 10일 간격)을 실시하고, 그 결과 무발생이 확인된 포장에서 생산된 것에 한해서만 수입허용

- 기타 우리측 우려병해충은 중국측의 종합적 과원관리 프로그램에 의거 정기적인 예찰(4-8월, 10일 간격) 및 적절한 방제조치 후 수출검사를 통해 화물무감염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서만 수입허용
- 매년 정기적으로 우리측 식물방역관에 의한 중국측의 과실파리 무발생 지역 증명 시스템 및 대한민국 수출 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사 결과 무발생 포장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만 수입허용
- 철저한 선과 및 수출검사를 통해 우리측 검역병해충의 무감염이 증명된 화물에 한해서만 수입허용(위생증에 별도 부기)
- 기타 요건의 효력은 3년으로 하고, 별도의 수정요구가 없는 경우 매년 자동 연장

첨부.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대한민국 수출을 위한 식물위생요건안 1부.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대한민국 수출을 위한 식물위생요건안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대 한국 수출과 관련하여 양국을 대표하여 중국 질검총국(이하 "AQSIQ"라 한다)과 대한민국 농림부 식물검역소(이하 "NPQS"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식물위생요건에 합의한다.

1. 개요

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중국산 양벚 생과실은 한·중 양국이 합의한 “대한민국 수출 중국산 양벚 생과실 식물위생요건[이하 “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여야 한다.

중국 AQSIQ는 이 요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궤과실과리를 포함한 [별표]의 검역병해충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수출용 양벚 재배 과수원 및 선과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수출검사를 통해 식물위생상태를 증명하여야 한다.

2. 적용지역 및 식물

중국 산둥성에서 생산된 양벚(*Prunus avium*) 생과실에 한한다.

3. 수송방법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에 한한다.

4.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및 통보

- 4.1 한국 수출용 양벧 사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및 수확된 사과실을 선과·포장·보관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AQSIQ에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4.2 AQSIQ는 이 요건에 적합한 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을 등록하고 등록 후에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병해충 방제 등 식물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4.3 AQSIQ는 매년 수출 개시 30일 전에 수출과수원(수출과수원명, 등록번호, 주소, 재배 면적·생산량) 및 수출선과장(선과장명, 등록번호, 주소) 목록을 NPQS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재배지 검사

- 5.1 AQSIQ는 수출과수원에서 [별표]에 나열된 검역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합적 과원 관리 프로그램”에 의거 정기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적절한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 5.2 AQSIQ는 특히 다음의 병해충을 “종합적 과원 관리 프로그램”의 예찰대상에 포함하여 재배기간 중(4월~8월) 과수원별로 지정된 식물보호자가 매 10일 간격으로 잎과 과실에 대해 재배지 검사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재배지 검사 결과 보고서는 매년 NPQS 식물 방역관이 현지 조사를 위하여 중국에 도착하는 즉시 NPQS 식물 방역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2.1 Plum pox virus 및 Cherry leaf roll virus

- 발생 혐의가 있는 경우 실험실에서 혈청학적 검사 등 정밀검사 하여야 함
- 재배지검사 결과 발생이 확인되면 해당 수출과수원을 포함 모든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대한민국 수출을 중단하여야 하며, 수출 재개 여부는 양국간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무발생 증명방안이 마련되어 요건이 개정된 이후부터 가능함
- 현재 중국 내 발생 분포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NPQS에 통보하여야 하며, NPQS의 위험평가를 통해 필요한 경우 양국간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검역조치가 마련될 수 있어야 함

5.2.2 *Anarsia lineatella*, *Grocholita funebrana*, *Grapholita prunivorana*

- 재배지검사 결과 발생이 확인되면 해당 수출과수원은 당해 시즌 대한민국 수출이 중단되어야 하며, 동 사실이 지체 없이 NPQS에 통보되어야 하며, 다른 과수원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히 방제 조치하고 당해 과수원 및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예찰(트랩 및 과실검사 포함)조사 하여야 함.

- 당해 과수원의 다음 시즌 수출재개 여부는 동 방제조치 및 예찰결과 무발생이 입증되는 경우에 양국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음

5.2.3 *Eurytoma samsonovi*, *Hoplocampa danfengensis*, *H. fulvicornis*, *Rhynchites auratus*, *R. auricapillus*, *R. confragossicollis*, *R. faldermanni*, *R. giganteus*

- 재배지검사 결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철저히 방제하여야 함

5.2.4 *Blumeriella jaapii*, *Clasterosporium carpophilum*

- 휴면기 및 재배 중 약제를 살포하고 감염가지 등 잠복처를 철저히 제거하여야 함
- 발생 혐의가 있는 경우 실험실에서 정밀 검사하여야 함
- 재배지검사 결과 발생이 확인된 당해 수출과수원은 당해 시즌동안 대한민국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함

5.3 NPQS 방역관은 매년 수출 개시 전 중국 현지에서 AQSIQ의 재배지 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수출과수원에서 우려병해충 발생여부를 AQSIQ 검역관과 함께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6. 생과실의 선과 및 포장

6.1 AQSIQ는 “4.”항에 따라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이 수출선과장에서 병해충 부착과 및 피해과 등이 철저

히 선별되어 포장되도록 감시 감독하여야 한다.

6.2 수출선과장으로 운반되는 모든 수출용 과실은 수출과수원의 등록번호가 부착된 상자를 이용하여 수출선과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각 수출선과장은 화물의 역추적성 확보를 위해 입출고 현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3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실만 수출용 상자에 포장되어야 하며, 한국 수출용 과실과 여타 시장용 과실이 섞이거나 혼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수출검사 및 증명

7.1 AQSIQ는 수출화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별표]의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7.2 수출검사는 각 수출화물량의 2% 이상을 검사하여야 하며, 병해충 검출 시에는 실험실에 정밀 검사 의뢰하여 동정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7.3 수출검사에서 “5.2.1 및 5.2.2”항의 재배지검사 대상 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당해 수출과수원을 포함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대한국 수출이 중지되고, 향후 양국간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무발생 증명 방안이 마련되어 요건이 개정된 이후에야 수출이 재개될 수 있다.

7.4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해당 더미를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후에는 수출이 가능하다.

7.5 검사증명서에는 “이 화물은 NPQS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하며, 검사결과 검역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부기하고, 선박화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봉인번호를, 항공화물은 ‘항공화물임’을 검사 증명서에 적절히 기재하여야 한다.

8. 수출포장의 표시

8.1 수출용 상자에는 행선지가 대한민국이라는 표시와 함께 수출 회사명 및 AQSIQ의 등록번호가 포함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8.2 각 파렛트 측면 최소 1면 이상에 ‘대한민국 수출용’이라는 표시와, 수출검사 후에는 ‘검사완료’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8.3 생과실을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에는 AQSIQ 검역관의 입회하에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화물의 경우 AQSIQ의 승인을 받은 방법(AQSIQ 마크가 있는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각 상자별로 봉인할 수 있다.

9. 수입검사

9.1 NPQS는 수입항에 도착한 화물의 검사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9.1.1 AQSIQ에서 발급한 검사증명서의 부기사항 및 봉인번호 기재여부

9.1.2 컨테이너 봉인이 파손되거나 검사증명서상의 봉인번호와 상이한지 여부

9.1.3 “8.”항의 수출포장의 표시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9.1.4 등록된 지정포장, 선별·저장시설, 수출업자를 통해 생산되어 수출된 화물인지 여부

9.2 상기 “9.1”항의 확인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처리 된다.

9.3 상기 “9.1”항의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NPQS는 관련규정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9.4 수입검사과정에서 [별표]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당해 화물은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9.4.1 살아있는 과실과리 및 “5.2.1 및 5.2.2”항의 재배지검사 대상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당해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조치하고, 원인이 규명되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국산 양벚생과실의 수입을 중단한다. 향후 양국간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무발생 증명 방안이 마련되어 요건이 개정된 이후부터 수출이 재개될 수 있다.

9.4.2 상기 “7.3”의 검사결과 금지병해충이 발견되기 이전에 선적된 화물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한 검사를 실시한다.

9.4.3 살아있는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한다.

10. 귤과실파리 예찰 및 발견 시 조치

10.1 AQSIQ는 대한민국 수출 지역(산동성)에서 귤과실파리를 정기적으로 예찰하고 발견 시에는 긴급 조치하여야 한다.

10.2 귤과실파리 예찰

10.2.1 귤과실파리에 대한 예찰은 “국가 과실파리 트랩 예찰 지침”에 따라 실시하되, 예찰조사 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10.2.2 AQSIQ는 매년 귤과실파리 예찰결과를 기록으로 작성하여 NPQS 식물방역관이 중국에 도착하는 즉시 NPQS 식물방역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0.2.3 AQSIQ는 “국가 과실파리 트랩 예찰 지침”이 수정·변경될 경우, NPQS에 적절히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0.3 귤과실파리 발견 시 조치

10.3.1 AQSIQ는 예찰결과 대한민국 수출 지역에서 귤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과실파리 긴급 근절 조치 계획”에 따라 검역

규제지역 설정 등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 검역 규제 지역산 양벧 생과실은 대한민국 수출검사 및 선적을 중지하여야 한다.

10.3.2 AQSIQ는 대한민국 수출 지역에서 굴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검역규제지역을 설정하여야 하고, 발견 즉시 NPQS에 관련된 상세 정보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통보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예기치 못한 자연요인(양국의 휴일, 주말 등)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72시간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굴과실파리 발견 일자
- 굴과실파리 발견 전 최종 트랩조사 일자
- 굴과실파리 트랩의 일련 번호 및 트랩 형태
- 굴과실파리가 발견된 트랩이 설치된 기주 식물 또는 트랩설치 장소
- 굴과실파리가 발견된 지점의 구체적인 주소
- 주변지역 정보(가장 가까운 수출과수원까지의 거리)
- 발견된 굴과실파리의 생활사 단계(성충 또는 유충)
- 발견된 굴과실파리의 수
- 발견된 굴과실파리의 성별(수컷 또는 암컷)
- 규제지역 설정일자
- 규제지역의 범위 및 규제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구역명

10.3.3 규제지역은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15km 이내로 설정되고,

규제 지역산 양벧 생과실(이미 수확되어 보관중인 생과실 포함)은 대한민국으로 수출이 중지된다. 규제지역이 설정된 이후에 규제지역 밖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생과실에 대해서는 “7.”항의 수출검사 및 증명 시 검사증명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

- “이 양벧 생과실은 꺾과실파리에 감염되어 있지 않으며, 규제지역 밖에서 생산된 것임을 증명함”

10.3.4 꺾과실파리 발견 전에 선적되어 수송 중에 있는 화물에 대하여는 도착 시 보다 철저한 검사를 실시 후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10.3.5 AQSIQ는 규제지역에서 박멸프로그램이 종료되어 동 지역이 다시 무발생 지역으로 간주될 때까지 NPQS에 그 활동 상황을 매주 통보해야 하며, 동 통보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박멸조치가 실시된 지역
- 박멸조치 실시 지역 내에서 증가된 트랩의 밀도
- 박멸조치 실시 지역 내에서 사용된 트랩의 종류 및 개수
- 박멸조치 실시 지역 내 트랩 검사 횟수
- 박멸조치 실시 지역 내에서 실시한 예찰 결과
- 살충제 살포, 토양 소독 등 기타 박멸 활동 내용

- 기주 과실 검사 내용 및 결과
- 기타 정보(굴과실파리 추가 발견 일자, 최종 발견 일 이후 유효 적산 온도)

10.3.6 AQSIQ는 굴과실파리 박멸 및 방제조치를 적어도 굴과실파리 1세대 기간 동안 계속하여야 하며, 규제지역은 굴과실파리가 최종 발견된 이후 3세대 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10.3.7 AQSIQ는 굴과실파리가 최종 발견된 이후 3세대 기간 동안 무발생이 지속된 이후 해당 지역을 굴과실파리 무발생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으며, 당해 사실을 NPQS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NPQS는 AQSIQ의 통보 내용을 분석하여 굴과실파리 무발생지역으로 인정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10.3.8 AQSIQ는 “과실파리 긴급 근절 조치 계획”이 수정·변경될 경우, NPQS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0.4 NPQS 식물방역관은 “10.2”항 굴과실파리 예찰 및 “10.3”항 발견 시 긴급조치가 정확히 실시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AQSIQ 검역관과 함께 수출지역을 매년 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1. 기타

11.1 AQSIQ는 “5.”항의 재배지검사 및 “10.”항의 굴과실파리 예찰 및 발견 시 조치와 관련하여 매년 NPQS 식물방역관의 현지

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NPQS 방역관 출발일 30일 전까지 현지조사 일자 및 일정이 포함된 현지조사 요청서신을 NPQS에 제공하여야 한다.

11.1.1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NPQS 식물방역관의 현지 검사 시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AQSIQ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11.1.2 현지조사 결과 검역적 안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이 요건은 재검토 될 수 있다.

11.2 AQSIQ는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양벧 병해충이 발생한 경우 NPQS에 즉시 통보하고, NPQS는 해당병해충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AQSIQ와 NPQS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1.3 이 요건에 정하지 아니한 수입검사절차 및 검사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 세부내용은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NPQS는 중국산 양벧 생과실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거나 긴급조치 등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경우 AQSIQ에 통보하여야 한다.

11.4 이 요건은 3년간 효력을 갖게 되며, 양국이 만료일로부터 적어도 2개월 전에 이 요건에 대한 수정 또는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매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별표]

중국산 양벚 생과실 관련 검역병해충 목록

병원체

Blumeriella jaapii, *Cherry leaf roll virus*, *Clasterosporium carpophilum*, *Peach latent mosaic viroid*, *Phomopsis amygdalina*, *Plum pox virus*

해충

Anarsia lineatella, *Bactrocera dorsalis*, *Caliroa ceraci*,
Eurytoma samsonovi, *Grapholita funebrana*, *Grapholita prunivorana*,
Hoplocampa danfengensis, *Hoplocampa fulvicornis*, *Pandemis cerasana*, *Parlatoria oleae*, *Pseudococcus longispinus*,
Rhynchites auratus, *Rhynchites auricapillus*,
Rhynchites confragossicollis, *Rhynchites faldermanni*,
Rhynchites giganteus